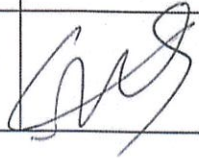


화랑·새마을정신의 글로벌화

문서번호	운영팀 - 211	팀 원	운영팀장	사무국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3 년	최보경	김미경	전기우	
결재일자	2026. 1. 14.	협 조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1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 실시
 - ▶ 위험성평가(제36조)
 - ▶ 안전조치(제38조)
 - ▶ 건강검진 실시(제129조)
 - ▶ 안전보건교육(제29조)



청 도 우 리 정 신 문 화 재 단
CHEONGDO FOUNDATION FOR KOREAN SPIRITUAL CULTURE

II 기본현황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추진배경

-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2022. 1. 27.)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확대 시행됨(2024. 1. 27.)

□ 중대재해 구분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등		
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재해요건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치료)	직업성질병자 3명 이상 (1년 이내 동일 유해요인)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사고 2개월 이상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원인 3개월 이상치료)
처벌 (병과)	요건	중대재해 의무 위반 + 중대재해 발생 (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 성립 시 처벌)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u>행정기관의 장</u>)				
	내용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 ② 법인 또는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③ 고의 중과실일 경우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2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

□ 관리대상 분류

-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속 근로자
- 공무원·기간제근로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법 적용대상 분류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별표 1]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

- 청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유지보수, 환경미화 업무
- 공원·녹지 유지관리, 산림조사·보호,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 대상 사업장 : 공공행정(현업업무 종사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적용 제외 규정 :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

3

근로자 현황

(2026. 1. 1. 기준 / 단위 : 명)

구분	합계	현업근로자 (시설물·장비관리원, 환경미화 등)	비현업근로자 (단순 조무원)
계	47	33	14
일반직	13	1	12
무기직	11	9	2
기간제	23	23	0

※ 기간제 근로자 수시 인원변동

4 위탁관리 시설 현황

구 분	주요시설명	건축면적(㎡)	구 조	비 고
신화랑 풍류마을	화랑기념관	4,204.36	지하 1층, 지상 2층	전시공간
	화랑오계관	1,990.35	지상 2층	교육공간
	화랑촌	1,635.97	지하 1층, 지상 2층	숙박공간
	궁도장	260.82	지상 1층	체험공간
	캠핑장	185.4	지상 1층	캠핑공간
	카라반	185.4	지상 1층(11개동)	숙박공간
	스카이트레일	159.09	지상 1층	레포츠공간
	짚롤러코스터	2,900	지상 1층	레포츠공간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새마을기념관	1,494.66	지하 1층, 지상 2층	전시공간
	대통령전용열차	105.0	기관차 1량, 객차 1량	〃
	신거역	80.0	신거역 1동	〃
	신도정미소	128.0	지상 1층	〃
	체험학습장	910.0	지상 1층	체험공간
	시대촌	1,059.26	초가(3), 슬레이트(3), 기와(3)	체험숙박

5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평 균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사고 발생 건수		-	-	-	1
사망사고 발생 건수		-	-	-	-
인명피해	계	-	-	-	1
	사망자 수	-	-	-	-
	부상자 수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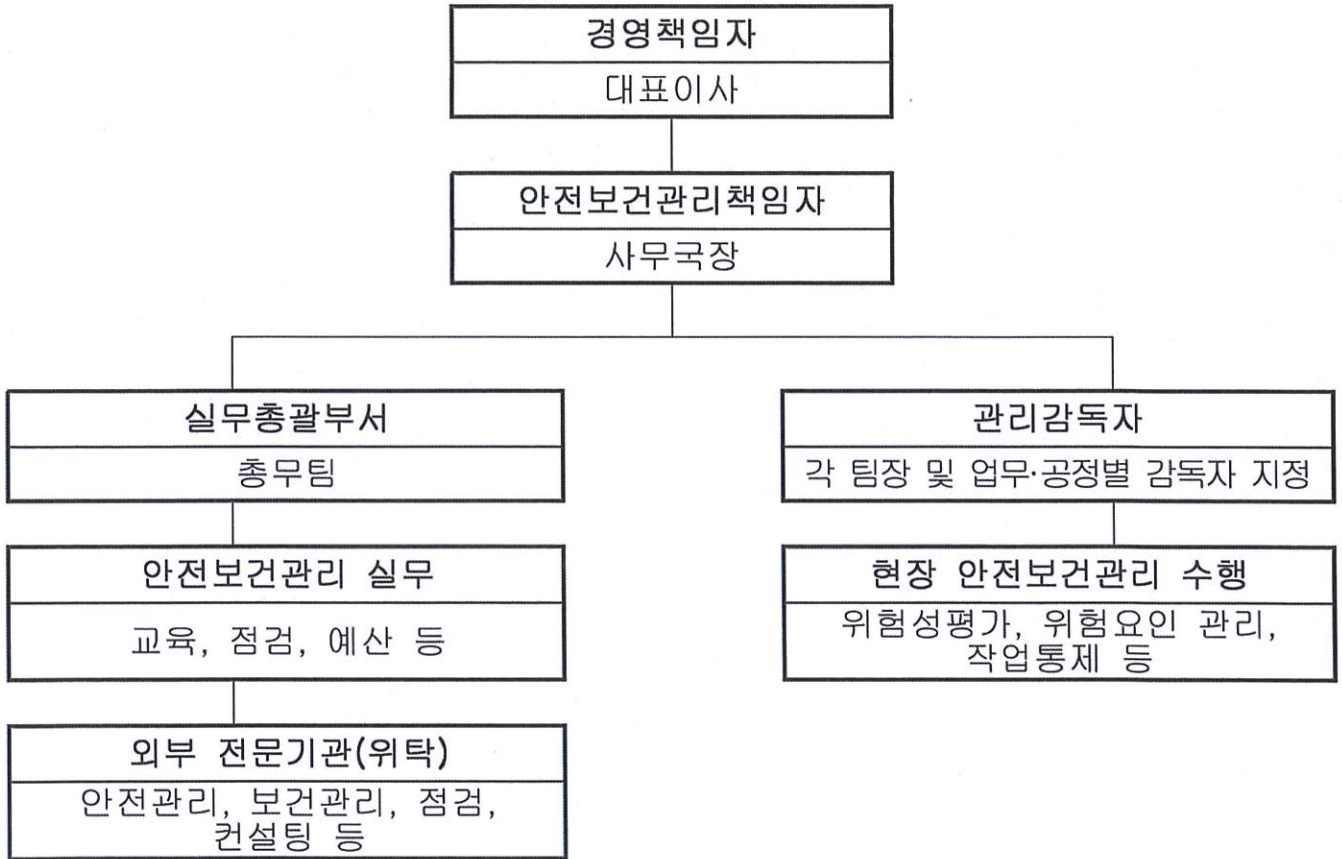
III

2026년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제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제18조



□ 의무이행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방지 조치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한다.

○ 역할 : 산업안전보건업무 총괄 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 선임 : 대표이사

□ 관리감독자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 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역할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제적인 점검·감독 확인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안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등

○ 선 임 : 각 부서 팀장 및 업무·공정별 감독자 지정

□ 안전관리자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역 할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좌하고 지도·조언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선 임 : 총무팀에서 관리자 업무대행 용역 시행

□ 보건관리자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역 할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좌하고 지도·조언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선 임 : 총무팀에서 관리자 업무대행 용역 시행

2

세부 추진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관리비 편성

- 편성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4호
- 재단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교육이수비용 : 10,000천원
 -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 4,800천원
 - 현업근로자 피복 및 보호장구 : 12,000천원
 -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 2,800천원
-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 시설관리운영 및 수선유지비 : 122,000천원
 - 스카이트레일·짚코스터 안전점검 용역 : 15,000천원

□ 전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실적 점검

○ 근거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점검 대상

- 전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전반
- 안전교육 이수 현황,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점검 내용

- 산업재해 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적정성 검토
-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및 점검·진단 실시 실적 점검

○ 점검 방법

- 자체 점검 및 관련 자료(교육일지, 점검표, 사고보고서 등) 확인
-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 자문 또는 컨설팅 실시

□ 위험성 평가 실시

○ 근거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 구 분

- 최초평가 : 신설 사업장 위탁관리의 경우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수시평가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실시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방 법 : 전문기관 위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 위험성 평가 실시 총괄
- 관리감독자(팀장), 근로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 대책 수립 등 참여

○ 절 차

- 1단계 : 사전준비(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및 분류)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 위험성 추정(공정별 작업 확인하여 위험요인 정량화)
 - 4단계 : 위험성 결정(허용 가능 여부 판단)
 - 5단계 :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 6단계 : 기록(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록하여 3년 이상 보존)
-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주기: 3년)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보호구 관리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보호구)
- 착용대상 : 유해위험 작업장 종사자

○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유해·위험 작업	보호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승차용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이 일어나는 작업	귀마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선창 등의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물체가 훑날리는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훑날리는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방독마스크
밀폐공간에서 행하는 작업 - 지하실이나 수관, 수로, 물탱크, 맨홀내부,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 등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 건강검진 실시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 추진계획

- 일반진단 시행 : 사무직(1회/2년), 현업직(1회/1년)
- 사후관리 : 유소견자 건강상담,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 추적관리

□ 자율안전보건 활동

가. 법령요지 게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 추진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를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작업장, 휴게실 등)에 게시

나. 안전보건 표지 부착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추진 내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자료 활용

다.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추진 내용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방호조치 실시
-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기계 및 기구	방호조치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엔진 브로워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엔진톱, 전동 트리머	날접촉 예방장치
잔디 전지차	덮개 부착하거나 방호망 설치

□ 안전·보건교육

○ 직무교육 대상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고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선입 후 3개월 이내)	6시간 이상 (2년마다)	전문기관 위탁 (온라인, 집체교육)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선입 후 3개월 이내)	24시간 이상 (2년마다)	전문기관 위탁 (온라인, 집체교육)	
관리감독자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16시간 이상 (매년)	전문기관 위탁	

○ 근로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제39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5 제1호라목 제39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를 통한 교육

□ 재해 발생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호
- 실시주체 및 시기
 - 마련 및 조치 : 표준 매뉴얼 마련
 - 점 검 : 운영팀 (6월, 12월)
- 실시 방법
 - 업무별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점검

○ 내 용

- 작업중지, 근로자 대비,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재발 방지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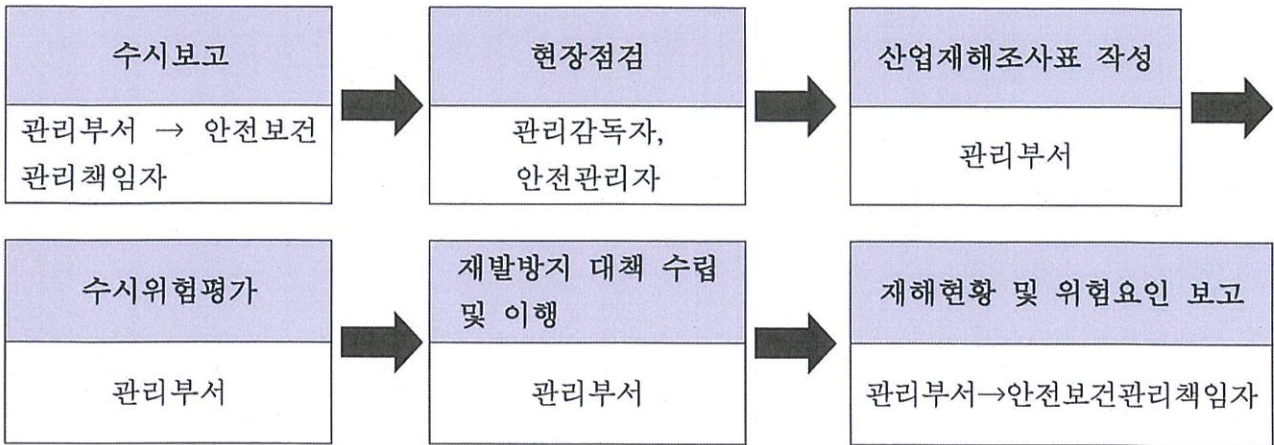
○ 산업재해 발생보고

- 보고체계 : 사고 발생 부서 → 고용노동부 장관(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보고대상 : 산업재해로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 보고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노동관서 제출(3년간 사본 보존)
- 보고시기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대재해 발생 시는 즉시 보고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 * 즉시 작업 중지 및 환자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에 긴급 후송
 - * 병원 이송시 담당자 및 팀장 반드시 동행
 - * 보고 및 현장 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산업재해 발생 후 조치

-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보건 교육 강화

○ 산업재해 발생보고 체계



○ 사고 보고 등 비상연락망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청도우리정신 문화재단	대표이사	기화서	010-2525-3689
	사무국장	전기우	010-3516-8387
	운영팀장	김미조	010-4715-0957
	운영팀원	천보걸	010-8600-3217

○ 유관기관

기 관	대표전화번호	비 고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053-667-6388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053-609-0552	

3

연간계획

NO	항목		월별 추진계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위험성 평가실시	전문기관	계획														
			실적														
		부서자체	계획														
			실적														
2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계획															
		실적															
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계획															
		실적															
4	관리감독자 교육	계획															
		실적															
5	근로자 안전 교육	계획															
		실적															
6	작업환경측정	계획															
		실적															